

출입국관리법

[시행 2009. 6.20] [법을 제9140 호, 2008.12.19, 일부개정]

제 11 장 고발과 통고처분

제 1 절 고발

제 101 조 (고발) ①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 <개정 1999.2.5>

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수사기관이 제 1 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제 2 절 통고처분

제 102 조 (통고처분) ①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"범칙금"이라 한다)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. <개정 1999.2.5>

②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을 임시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시납부시킬 수 있다.

③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2.29>

④제 47 조 내지 제 50 조의 규정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 244 조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.

제 103 조 (범칙금의 양정기준등) ①제 10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②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연령과 환경,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, 범칙금부담능력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 10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 104 조 (통고처분의 고지방법)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의 방법에 의한다.

제 105 조 (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) ①출입국사범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10 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2.29>

②사무소장·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고발하기 전에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제 2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.

제 106 조 (일사부재리)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.

부칙 <제 8726 호, 2007.12.21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출국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출국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도 제 4 조의 2 부터 제 4 조의 5 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 <제9142 호,2008.12.19>

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